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반의”를 “부에서 동일 임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부장과 표준지휘조직도의 안전담당 및 연락공보담당”을 “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비상지원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지휘요원 : 현장지휘부
2. (현행과 같음)
3. 통신지원요원 :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 현장지휘부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반장”을 각각 “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긴급복구부장”을 “현장지휘부장”으로, “반장”을 “요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① ~ ③ (생략)</p> <p>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단위지휘관 : 표준지휘조직도 중 <u>반의</u> 현장활동을 지휘·조정 및 통제하는 자</p> <p>7. 지휘참모 : 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하거나 통제단장의 특정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통제단의 각 <u>부장과 표준지휘조직도의 안전담당 및 연락공보담당</u></p> <p>8. (생략)</p> <p>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① (생략)</p> <p>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u>비상지원팀</u>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①</p>	<p>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부에서 동일 임무의</u> ---- -----</p> <p>7. ----- ----- ----- ----- <u>부장</u></p> <p>8. (현행과 같음)</p> <p>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대응계획부</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①</p>

의료반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 (생략)

②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생략)
2. 통제단의 대응계획부장 또는 소속 반장
3. 자원지원부장 또는 소속 반장
4. (생략)
5. 긴급복구부장 또는 소속 반장
6. (생략)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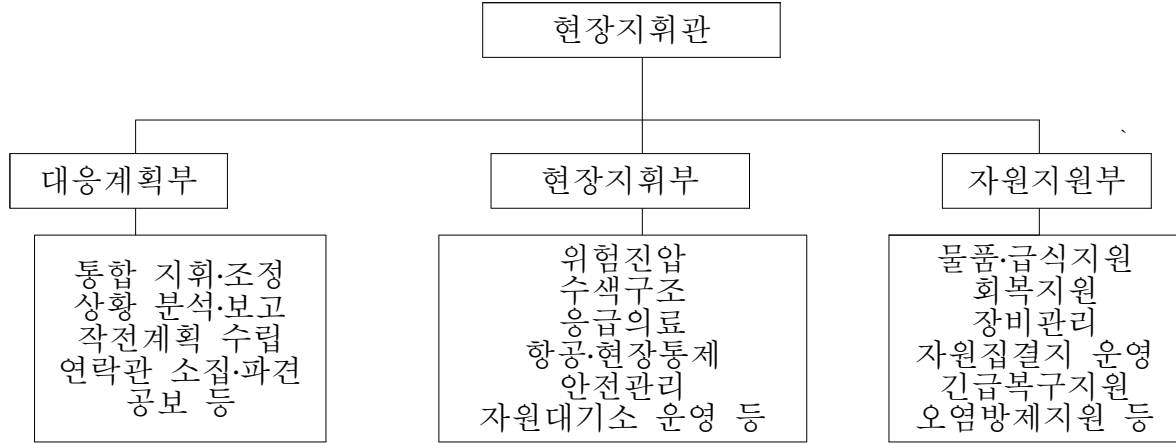
1. (현행과 같음)
2. -----
-- 요원
3. ----- 요원
4. (현행과 같음)
5. 현장지휘부장 ----- 요원
6. (현행과 같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1. 25.> <전문개정>

표준지휘조직도(제9조제3항 관련)

1. 표준지휘조직도



비고: 위 표의 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부: 현장지휘관의 임무수행을 기능별로 보좌하는 최고 단위조직
2. 부별 임무는 예시로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새로운 임무 가능

2. 부서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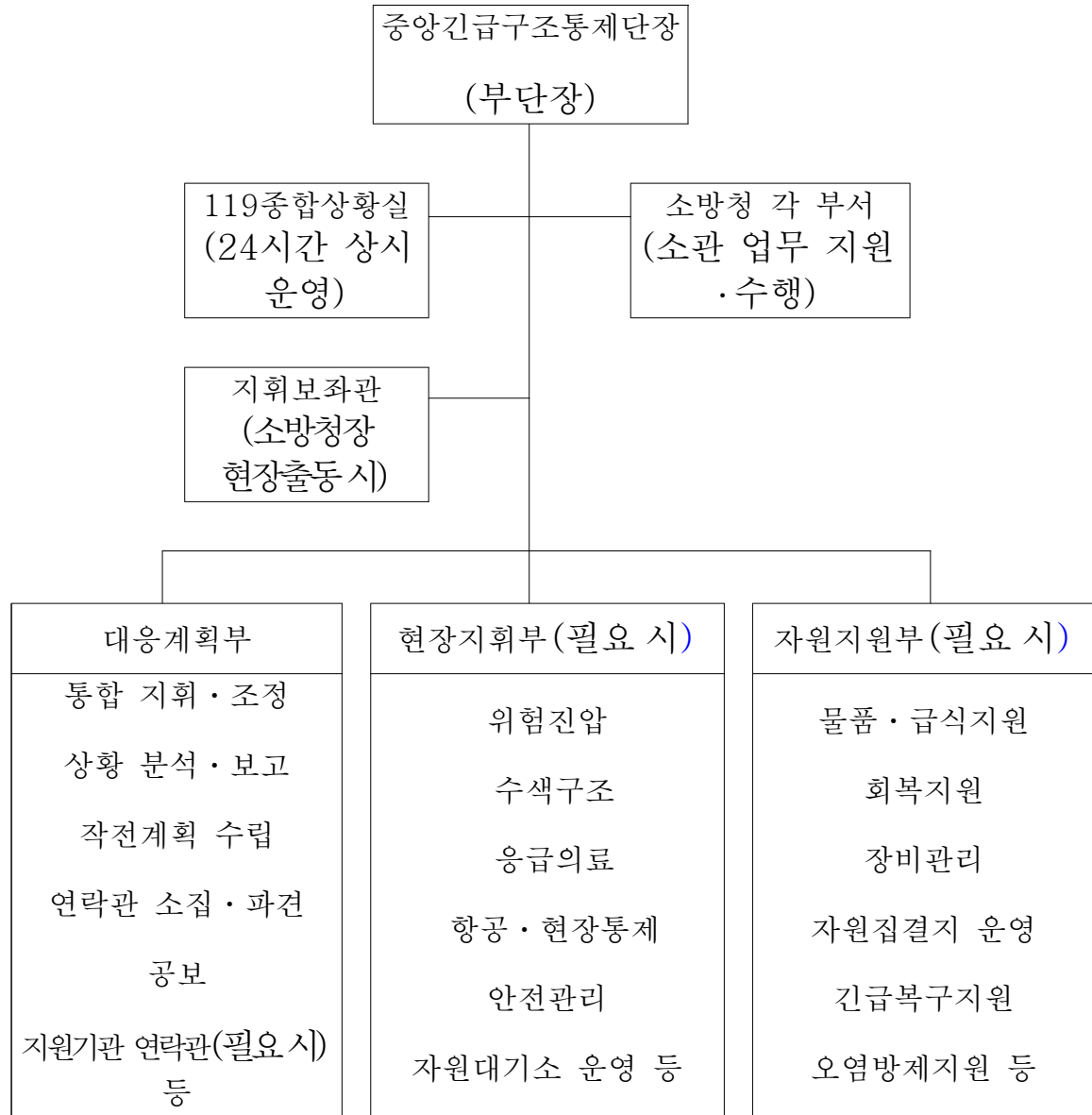
부서	임무
대 응 계 획 부	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유관기관 등에 대한 통합 지휘·조정 나.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상황예측 다.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 라.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유관기관과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현 장 지 휘 부	가. 진압·구조·응급의료 등에 대한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나. 회전의 항공기 등에 대한 응급의료 이송 및 운항 통제, 이·착륙장 관리 등 다. 재난현장 등에 대한 경찰관서 현장 통제 활동에 대한 지휘·조정·통제 및 대피계획 지원 등 라. 소속기관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의 수립 및 교육 마. 소속기관 임무수행지역의 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바.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
자 원 지 원 부	가. 대응자원 현황을 대응계획부에 제공하고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및 배치 나. 현장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관리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지자체 등 긴급복구 및 오염방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3] <전문개정>

중앙통제단의 구성 (제12조제1항관련)

1. 중앙통제단 조직도



2. 부서별 임무

부서별	주요임무	대응계획
중앙통제단장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지휘통제 계획(#1)
119종합상황실	1. 중앙통제단 지원기능수행 2.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 계획 가동지원	기능별 대응 계획 (#1-11)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4. 대변인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2) 가동	
소방청 각 부서		1.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2.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기능별 대응 계획(#1-11)
지휘보좌관		1. 중앙통제단장 보좌 2. 그 밖에 중앙통제단장 지원활동	지휘통제 계획(#1)
대응 계획부	통합지휘·조정	1. 지휘통제계획(#1) 가동 2.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지휘통제 계획(#1)
	상황분석·보고	1. 재난상황 정보를 종합 분석·보고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보고	지휘통제 계획(#1)
	작전계획 수립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 계획 수립·지원	지휘통제 계획(#1)
	연락관 소집·파견	1.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3. 지원기관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지휘통제 계획(#1)
	공보	1. 대중정보계획(#3) 가동 2.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3.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2) 가동	대중정보 계획(#3)
	지원기관 연락관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 구조지원활동 조정·통제 2. 대규모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 시 탐색구조 활동(국방부), 현장통제(경찰청), 응급의료(보건복지부) 지원 등	지원기관 별 세부대응계획
현장 지휘부	위험진압	정부차원의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구조진압 계획(#5)
	수색구조	정부차원의 수색 및 인명구조 등 지원	구조진압 계획(#5)
	응급의료	1.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2.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3.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 계획(#6)

	항공· 현장통제	1. 회전익 항공기 등 현장활동 지휘·조정·통제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지휘·조정·통제 3.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4.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지휘통제 계획(#1) 현장통제 계획(#8)
	안전관리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안전관리 지원	지휘통제 계획(#1)
	자원대기소 운영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자원대기소 운영 지원	구조진압 계획(#5)
자 원 지 원 부	물품· 급식지원	정부차원의 물품·급식 지원	긴급구호 계획(#10)
	회복지원	정부차원의 긴급 구호 활동 및 회복 지원	긴급구호 계획(#10)
	장비관리	1. 정부차원의 필요 장비·시설 지원 2.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3.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재난통신 계획(#11) 구조진압 계획(#5)
	자원집결지 운영	소방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통제단 자원집결지 요구사항 지원	구조진압 계획(#5)
	긴급복구 지원	1.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2.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긴급복구 계획(#9)
	오염· 방제지원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방제 지원활동	긴급오염 통제계획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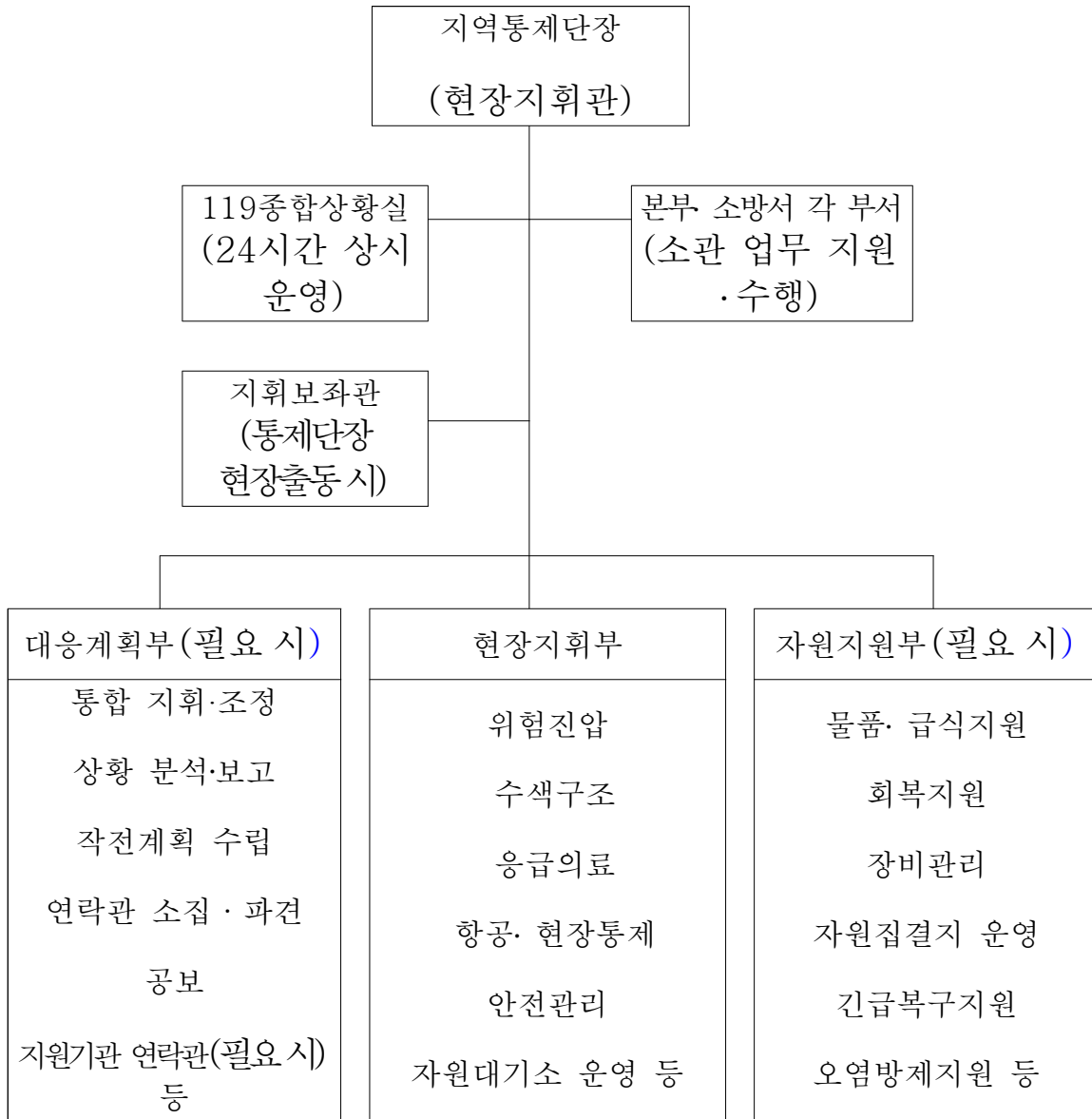
※ 통제단 조직(기능)은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부분적(확대 또는 축소)으로 운영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4] <전문개정>

지역통제단의 구성(제13조제1항관련)

1. 지역통제단 조직도



2. 부서별 임무

부서별	주요 임무	대응계획
지역통제단장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지휘통제 계획(#1)
119종합상황실	1. 시·도 및 시·군·구 통제단 지원기능수행 2.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 계획 가동지원 3. 소방청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4. 비상경고계획(#2) 가동	기능별 대응 계획(#1-11)
본부·소방서	1.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기능별 긴급구	기능별 대

각 부서	조대응계획 가동지원 2.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응 계 획 (#1-11)	
지휘보좌관	1. 시·도 및 시·군·구 통제단장 보좌 2.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지휘통제 계획(#1)	
대 응 계 획 부	통합지휘· 조정	1.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3.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지 휘 통 제 계획(#1)
	상황분석· 보고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 재난상황 예측 3. 작전계획 임무담당자와 공동으로 대응활동 계획 수립 4.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한 보고	지 휘 통 제 계획(#1)
	작전계획 수립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지 휘 통 제 계획(#1)
	연락관 소집·과견	1.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 2. 현장상황관리관 과견 3. 지원기관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지 휘 통 제 계획(#1)
	공 보	1. 대중정보계획(#3) 가동 2.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3.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2) 가동	대 중 정 보 계획(#3)
	지원기관 연락관	1. 시·도 및 시·군·구 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 구조지원활동 조정·통제 2.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별 긴급구조활동 지원	지 원 기 관 별 세부대 응계획
현 장 지 휘 부	위험진압	각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구 조 진 압 계획(#5)
	수색구조	각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색 및 인명구조 지원	구 조 진 압 계획(#5)
	응급의료	1.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4. 사상자 현황과약 및 보고자료 제공	응 급 의 료 계획(#6)
	항공· 현장통제	1.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3. 시·도 및 시·군·구 대피계획 지원 4.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지 휘 통 제 계획(#1) 현 장 통 제 계획(#8)

	안전관리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지휘 통제 계획(#1)
	자원대기소 운영	자원대기소 운영	구조진압 계획(#5)
자 원 지 원 부	물품·급식지원	1. 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물품 지원 2.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구호 계획(#10)
	회복지원	1. 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회복 지원 2.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구호 계획(#10)
	장비관리	1.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4.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재난통신 계획(#11) 구조진압 계획(#5)
	자원집결지 운영	현장인력 지원 및 자원집결지운영	구조진압 계획(#5)
	긴급복구 지원	1.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2.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긴급복구 계획(#9)
	오염·방제지원	1.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2.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 계획(#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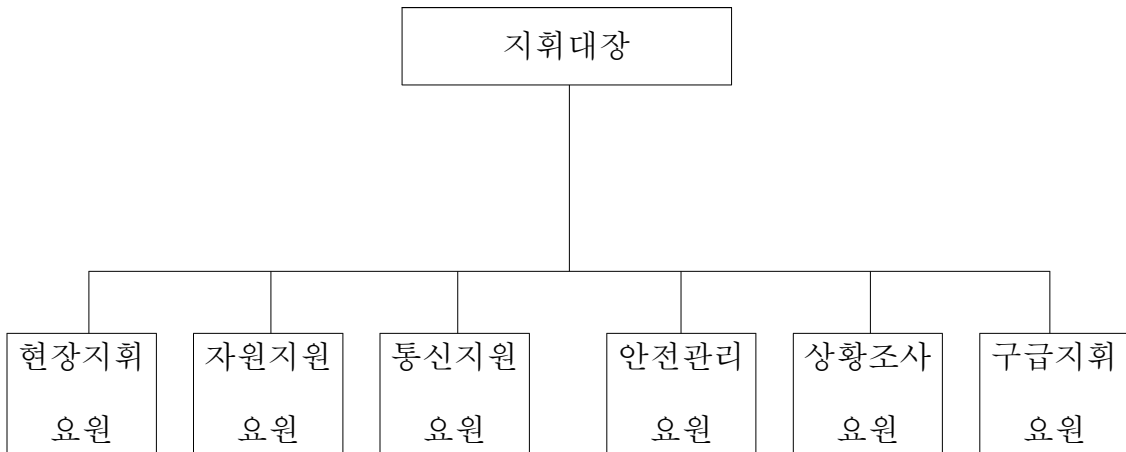
※ 통제단 조직(기능)은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부분적(확대 또는 축소)으로 운영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5] <전문개정>

긴급구조지휘대(제16조제1항 관련)

1. 구성



2. 임무

구분	주요 임무
지휘대장	가.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 시 현장지휘·조정·통제 나. 통제단 가동 전 재난현장 지휘활동 등
현장지휘요원	가.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 시 지휘대장 보좌 나. 통제단 가동 전 재난현장 대응활동 계획 수립 등
자원지원요원	가.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선정 및 동원자원 관리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협정체결기관 동원요청 등
통신지원요원	가. 재난현장 통신지원체계 유지·관리 나. 지휘대장의 현장활동대원 무전지휘 운영 지원 등
안전관리요원	가.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나. 재난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상황조사 요원	가. 재난현장과 상황실(지휘부)간 실시간 정보지원체계 구축 나. 현장상황 파악 및 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 정보 제공 등
구급지휘요원	가.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체계 가동 나. 사상자 관리 및 병원수용능력 파악 등 의료자원 관리 등